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298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20. 7.
6. 접수 제13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